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

특약 약관

[2025 년 4 월 개정]



BNP PARIBAS CARDIF
BNP파리바 카디프생명

변화하는
세상을 위한
보험사

목 차

제 1 관 목적	3
제 1 조 【목적】	3
제 2 관 보험금의 지급	3
제 2 조 【적용대상】	3
제 3 조 【보험금의 청구】	3
제 4 조 【보험금의 지급절차】	3
제 3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	4
제 5 조 【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】	4
제 6 조 【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】	4
제 4 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	5
제 7 조 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	5
제 5 관 기타사항	5
제 8 조 【준용규정】	5

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

※ 이 특약은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.

제1관 목적

제1조 【목적】

이 특약은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가 보험계약자(이하 '계약자'라 합니다)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(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. 이하 '주계약'이라 합니다)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.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조 【적용대상】

이 특약은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.

제3조 【보험금의 청구】

지정대리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. 청구서(회사양식)
2.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장해진단서, 암진단서 등)
3.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)
4.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
5.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
제4조 【보험금의 지급절차】

-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3조(보험금의 청구)에서 정한 구비서류와 제2조(적용 대상)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3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

제5조 【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】

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(이하 '지정대리청구인'이라 합니다)으로 지정(제6조(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)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)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1.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2.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.

제6조 【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】

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증권을 재발행합니다.

1.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(회사양식)

2.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(기본증명서 등)
3. 신분증(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계약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)

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|||||

제7조 【특약의 체결 및 소멸】

-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.
- ② 제2조(적용대상)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.

제5관 기타사항 |||||

제8조 【준용규정】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